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03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박 정 · 김성원 · 김주영
이양수 · 이기현 · 허 영
황명선 · 소병훈 · 이학영
김영환 · 박홍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 제3호 신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통행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민·관·군협의체 운영)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농하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군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사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u> <u>지)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u> <u>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통행제</u> <u>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u> <u>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u> <u>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u> <u>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u> <u>에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의</u> <u>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9조의3(민·관·군협의체 운영)</u> <u>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에</u> <u>서 거주 또는 영농하는 지역주</u> <u>민의 고충을 예방하고 관리하</u> <u>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민</u> <u>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u> <u>군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민·관·군협</u> <u>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제20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0조(손실보상) ① ----- -----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1. 2. (생략) ② ~ ④ (생략)	----- -----. ----- ----- -----. 1. <u>군사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